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그간 단열·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기
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준을 정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풍력 발전시설의 건축물 옥상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방안(경제 규제혁신 TF,
'22.7.28)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
조제1항 개정)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
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
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

나. 공작물의 범위에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포함(안 제118조

제1항 개정)

다.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개정)

라. 건축물대장에 기입하는 주요시공자 범위 명확화(안 제17조 개정)
종합/전문공사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

마.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명확화(안 제27조의2 개정)

공개공지 내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차량주차가 불가하나, 제한행위 유형에 차량주차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단속·처벌 등 행정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편익 보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 . ~ . .)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종합공사”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한다.

제27조의2제7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개공지등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높이”를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 공작물 중 높이”로, “발전설비”를 “발전설비 및 동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생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 ----- ----- -----.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1. ----- ----- ----- ----- ----- ----- ----- ----- ----- ----- ----- ----- ----- ----- -----.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	가. -----

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1) (생략)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
(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
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
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
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
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
성이 인정된 경우 <단서
신설>

나. (생략)

2. (생략)

⑦ ~ ⑨ (생략)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
제

② ~ ④ (생략)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

1)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수하였음
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
략할 수 있다.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2. (생략)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⑥ (생략)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나. (생략)

<신설>

3. ~ 5. (생략)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

1. -----
-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2.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공개공지등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3. ~ 5. (현행과 같음)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
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
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
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
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
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 ⑦ (생략)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
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
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10. (생략)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

1. --- 10미터 -----

2. --- 10미터-----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
용)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 공
작물 중 높이 -----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u>발전설비</u> 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u>발전설비 및 동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u>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과	
연락처	(044) 201 - 4082, 4985